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2 발의연월일: 2024. 6. 12.

발 의 자:김선교·서천호·김성원

구자근 · 김예지 · 우재준

김위상 • 윤한홍 • 김상훈

송석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수상레저안전법」상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자는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이 금지되고 있으나,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의 경우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제한 규정이 없음.

과거 법 시행 초기에는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,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접근하기 용이한 무동 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체험·낚시·투어 등의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임.

그러나, 일부 활동자들이 주취 상태에서 카약, 카누, 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로 활동하고 있어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 기구·선박·활 동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.

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음주나 약물복용시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나 선박보다 시각기능·판단력 저하 등 내재된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, 동력과 무동력을 구분하지 않고 음주와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항을 모두 금지하는 「해상교통안전법」,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및 음주와 약물복용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는 「도로교통법」 등 타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제6호,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28조, 제61조제4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).

법률 제 호

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6호 중 "경우"를 "경우(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로 한정한다)"로 한다.

제27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"동력수상레저기구"를 각각 "수상레저기구"로 한다.

제28조 중 "동력수상레저기구"를 "수상레저기구"로 한다.

제61조제4호 중 "사람"을 "사람(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)"으로 한다.

제64조제1항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의2.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 기구를 조종한 사람
- 2의3.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 7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(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)
- 2의4.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17조(조종면허의 취소・정지) | 제17조(조종면허의 취소・정지) |
| ①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| ① |
|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| |
|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 | |
| 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| |
|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| |
|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조 | |
| 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 | |
| 다. 다만, 제1호, 제2호 또는 제4 | |
| 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면 | |
|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 | |
| 1. ~ 5. (생 략) | 1. ~ 5. (현행과 같음) |
| 6.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| 6 |
|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| |
|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 | |
| 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| |
|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 | |
| 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 | |
| 니한 <u>경우</u> | <u>경우(동력수상레저기구를</u> |
| | 조종한 경우로 한정한다) |
| 7. ~ 10. (생 략) | 7. ~ 10. (현행과 같음)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| 제27조(주취 중 조종 금지) ① 누 | 제27조(주취 중 조종 금지) ① |
| 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(「해상 | |

교통안전법」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<u>동력수상레저기</u> 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(이하 "관계공무원"이라 한다) 은 <u>동력수상레저기구</u>를 조종한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<u>동력수 상레저기구</u>를 조종한 사람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.

1. • 2. (생략)

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(근 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 외한다)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 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 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 를 해당 <u>동력수상레저기구</u>를 조 종한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 다.

④ (생 략)

제28조(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저 조종 금지) 누구든지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

| <u>수상레저기구</u> |
|-------------------|
| |
| ② |
| |
| <u>수상레저기구</u> |
| |
| |
| |
| <u>수상레</u> |
| <u> 저기구</u> |
| ·. |
| 1.・2. (현행과 같음) |
| ③ |
| |
| |
| |
| |
| <u>수상레저기구</u> |
| |
| |
| ④ (현행과 같음) |
| 128조(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|
| 조종 금지) |
| |

른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·대마의 영향,「화학물질관리법」
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,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<u>동력수상레저기</u> 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 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

5. ~ 7. (생략)

제6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.

- 1. (생략)
- 2.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

| <u>수상레저기구</u> |
|------------------|
| |
| 제61조(벌칙) |
| |
| |
| ·. |
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4 |
| |
| |
| |
| 사람(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 |
| 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) |
| 5. ~ 7. (현행과 같음) |
| 제64조(과태료) ① |
| |
| |
| |
| 1. (현행과 같음) |
| 2 |
| |

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 <<u>신</u> 설>

2의2.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

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동력수 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2의3.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도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 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 니한 사람(무동력수상레저기 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 다)

2의4.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 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 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 기구를 조종한 사람

3. ~ 11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3. ~ 11. (생 략)

② ~ ④ (생 략)